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12. 최형두의원 등 24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6)

상정 ·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형두의원)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불법드론·폭발물 등)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최첨단 ICT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선국을 준공한 후 동 무선국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직접 확인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준공검사에 갈음하려는 취지임.

검사기관인 KCA가 검사대상 표본추출, 일정협의, 현장검사, 사후조치 및 비표본무선국 처리 등의 준공검사를 수행하는데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통해 무선국 개설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한편 전파차단장치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인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를 인가한 사례는 1건(2024. 4.)에 불과함.

4. 대체토론 요지

(최형두의원)

전과를 활용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또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과 확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